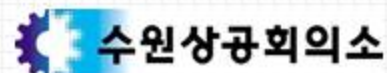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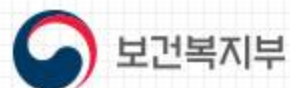




# 2021년 수원상공회의소 시니어인턴십 사업





# 목 차

**1** 사업추진 체계

**2**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

**3** 참여자격 - 기업

**4** 참여자격 - 근로자

**5** 약정체결 및 관리

**6** 지원금액 및 내용

**7** 참여방법 및 절차

**8**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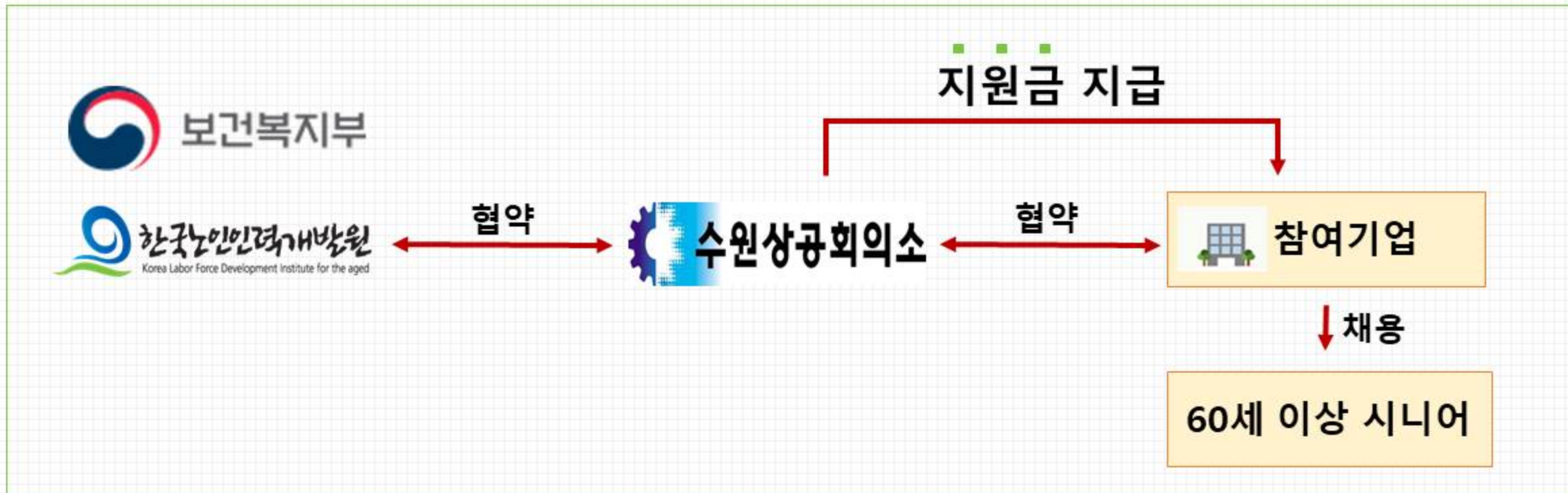
# 1. 사업 추진 체계

## ■ 사업 정의

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## ■ 사업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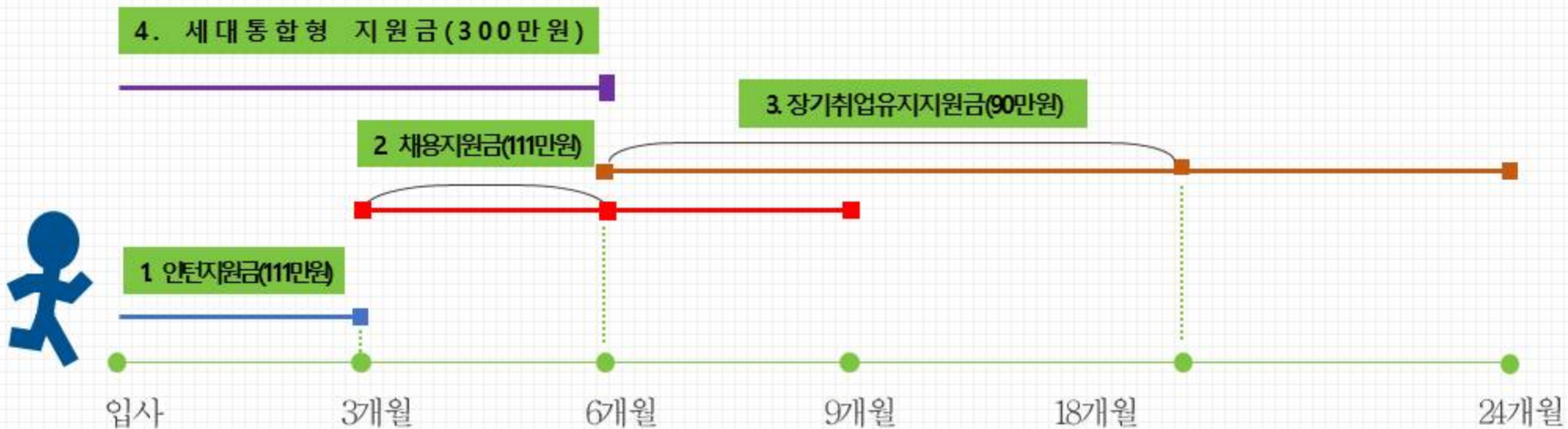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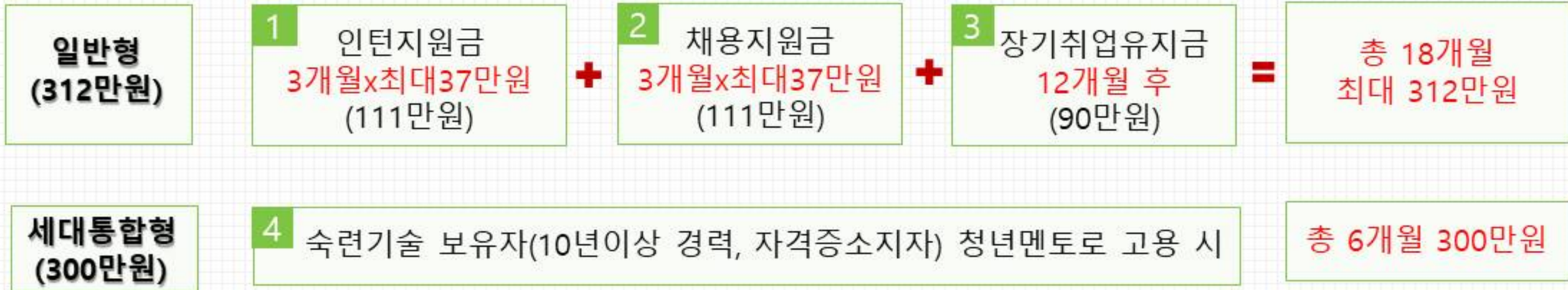
- 일자리창출 | 만 60세 이상인자에게 민간분야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전 및 복지재정 절감에 기여
- 고용안정화 | 인턴기간을 통해 근로능력을 검증하고, 계속·장기고용을 유도하여 참여자의 고용안정화에 기여





## 2.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

사업내용 : 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한 기업으로 인건비 지원



## 3. 참여자격 - 기업

### 참여기업

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**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** 등  
단, 60세이상 시니어를 입사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함

### 제외대상

- 1)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인력파견업 등
- 2) 임금체불사업장
- 3)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
- 4)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- 5)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
## 4. 참여자격 - 근로자

### 근로자

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(수원상공회의소)에서 진행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

\* 소양교육 : 교육시간(20분 소요), 방문 및 온라인 진행

### 제외대상

1.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

예시)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

2.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(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)

3.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(사위-처부모, 며느리-시부모), 직계존비속, 혈족(형제, 자매 등)관계에 있는 자

4.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)

5. 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

6.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

7.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

8.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
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



## 5. 약정 체결 및 관리

근로계약	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<b>단기계약직, 정규직</b> 참여가능(일용직 제외)
보험적용	입사일 기준 <b>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</b> 가입
약정급여	최저임금법이 정하는 <b>최저임금 이상</b> 약정, 지급( <b>2021년 8,720원</b> )
근무관리	인턴기간 <b>3개월 간 출근부 작성</b> , 비치
전담자 지정	참여기업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<b>전담자를 지정</b> 하여 운영
참여 제외직종	<p><b>&lt;제외직종('21년 기준 30개)&gt; 선출직, 공무원, 경비 및 청소 관련 직종 등</b></p> <p>* 제외직종                      의회의원·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, 법률·경찰·소방·교도 관리자, 대학교수, 대학 시간강사, 중고등학교 교사, 초등학교 교사, 특수교육교사, 장학관·연구관 및 교육전문가, 성직자, 기타 종교 종사원, 경찰관 및 수사관, 소방관,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, 영관급 이상 장교, 위관급장교, 부사관, 기타 군인, <u>경호원, 시설·특수 경비원, 기타 경호·보안 종사원, 경비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</u> 및 재활용품 수거원,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, 구두 미화원, 세탁원, 가사 도우미, 우편물 집배원</p> <p>*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,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제외</p>



# 7. 참여방법 및 절차





## 8. 유의사항

### 퇴사처리

권고사직으로 퇴사 시,  
기 지원된 지원금을  
반환해야합니다



II  
자진퇴사(○)  
계약기간만료(○)

### 부정수급

1. 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자를 90일 이내 재참여
2.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십 참여자로 등재
3.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 등



II  
보조금 관리에 관한  
법률상 벌칙규정(제  
40조,41조) 참고

감사합니다.

